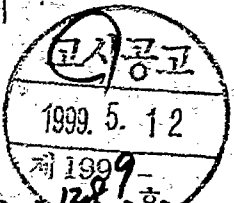


9/12/1999

서울특별시

우) 100-744 서울시 중구 태평로 1가 31번지 / 전화(02)3707-9613 / 전송3707-9629
처리부서: 공원녹지과(서소문별관8층) 과장 최용호 사무관 박문수 담당 정일환

문서번호 공녹58215-904
시행일자 1999. 5. 12
(경유)(제 1 안)
수신 내부결재
참조



취급		시	장
보존		김문수	
행정1부시장			
실장	전결	법무담당관 심사필	
과장	김영호		
기안	정일환	도시공원	합조
		담당사무관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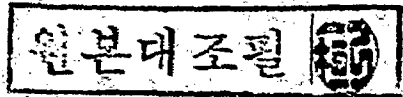
제목 도시계획시설(여의도근린공원) 조성계획 결정

1. 여의 58215-289 ('99.5.8)호와 관련입니다.
2. 서울특별시고시 제1999-40 ('99.2.25)호에 의거 공원으로 지정된 영등포구 여의도동 2번지 일대 여의도근린공원에 대한 공원조성계획 결정안이 우리시 '99년 제1차 도시공원위원회('99.3.23) 심의에서 원안가결되었기
3. 도시공원법 제4조,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첨과 같이 공원조성계획을 결정하고 도시계획법 제12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자 합니다.

- 첨부 : 1. 고시문(안) 1부.
2. 여의도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조서 및 도면 각1부. 끝.

서울특별시

(제 2 안)
수신 건설교통부장관
참조 도시관리과장



제목 도시계획시설(여의도근린공원) 조성계획 결정보고

1. 서울특별시고시 제1999-40('99. 2. 25)호로 도시계획시설(공원) 결정된 영등포구 여의도동 2번지 일대 여의도근린공원에 대하여
2. 도시공원법 제4조 및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공원의 조성계획을 붙임과 같이 결정하였기 보고합니다.

첨부 : 1. 고시문 사본 1부.

2. 여의도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도서 각1부. 끝.

서울특별시

(제 3 안)

수신 행정자치부장관

참조 법무담당관

제목 관보 게재 의뢰

1. 우리시 도시계획시설(여의도근린공원)에 대하여 조성계획을 붙임과 같이 결정 하였기 관보게재 의뢰합니다.

가. 고시근거 : 서울특별시고시 제1999- 호('99.)

나. 고시명 : 도시계획시설(여의도근린공원) 조성계획 결정

다. 법적근거 : 도시계획법 제12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

첨부 : 고시문 사본 및 조서 각 2부. 끝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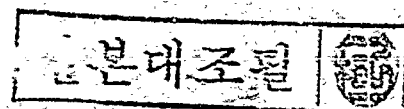
서울특별시

(제 4 안)

수신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

참조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장

제목 도시계획시설(여의도근린공원) 조성계획 결정 통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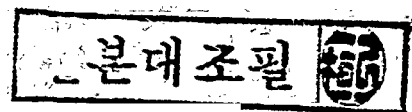
1. 귀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여의도근린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
법 제4조 및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첨과 같이 조성계
획을 결정하고 고시하였기 통보하니,

2.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조성계획 결정에 따른 지적
승인 등 제반절차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첨부 : 1. 고시문 사본 1부.

2. 여의도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도서 1부. 끝.

서울특별시



고 시 (안)

서울특별시고시 제1999-^{1/2}호

고시번호	1999.5.11	제 123 호
담당자	김영환	법무담당관
1644	이창민	행정팀장

도시계획시설(여의도근린공원) 조성계획 결정

1. 서울특별시고시 제1999-40호('99. 2.25)로 도시계획시설(공원)로 결정된 영등포구 여의도동 2번지 일대 여의도근린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법 제 4조,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계획을 결정하였기 도시계획법 제12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공원녹지과(전화 : 3707-9613)와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(전화 : 761-4079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

1999년 5월 일

서울특별시장

- 가. 도시계획시설(여의도근린공원) 조성계획 결정 조서 : 별항
 - 나. 도시계획시설(여의도근린공원) 조성계획 결정 도면 : 게재생략
- *서울특별시 공원녹지과와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에 비치한 도면과 같습니다.

